

## 붙임 1 주요 질의·답변(Q&A)

### Q1.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 A1. 서울 소재 대학 소속 동아리로, 대학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앙동아리 또는 단과대·학과 동아리 등
- 최근 6개월 이상 동아리 활동 실적 필요
  - 타 대학과 연합(5개교 이상)하여 신청할 경우 대표 대학 지정 필요

### Q2. 연합동아리의 기준은?

- A2. 기존에 활동 중인 연합동아리 뿐만 아니라 단일 동아리 간 새롭게 연합동아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단, 연합동아리의 경우에도 서울 소재 대학 소속 동아리만 참여 가능하며, 활동지역은 서울시 내로 제한됨

### Q3. 동아리 간 연합하여 신청 시 대표 대학의 추천 가능 동아리 수에 포함되는지?

- A3. 대학별 추천 가능 동아리 수는 대학 소속 동아리만 포함하며, 동아리 간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 대학의 추천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 A대학 추천 가능 동아리 수가 최대 20개고, 동아리 연합 대표 대학으로 지정 시  
→ 동아리 연합을 제외하고 최대 20개 동아리 추천 가능)

### Q4. 사회기여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 A4.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시정가치와 연계된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모두 사회기여활동으로 볼 수 있음
- 복지·안전·건강·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포괄
  - 자원봉사·재능기부·멘토링·공연·전시 등 형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 ※ 붙임 1 예시 참조

### Q5. 기존에 사회기여활동을 하지 않았던 동아리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데, 사전에 활동기관을 연결해줄 수 있는지?

- A5.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기여활동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활동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사전에 활동 가능한 기관을 정하여 안내할 경우 활동계획이 중복되거나 활동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동아리가 기관 섭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컨설팅업체에서 지원할 예정임

### Q6. 활동계획서에 구체적인 활동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A6. 활동계획서 제출 시 활동기관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활동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심사에 별도 불이익은 없음

**Q7. 종교 포교활동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종교 동아리는 신청할 수 없는지?**

A7. 일반적인 활동 시에는 종교 동아리도 신청 가능하나, 선교·포교활동은 불가함

※ (참고) 제외대상 활동 : 정치활동, 종교 포교활동, 상업적 활동

**Q8. 국비·시비·구비 등을 지원받는 동아리 외에 대학이나 민간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8.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동아리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대학 자체 지원금 또는 민간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대학혁신지원사업(교육부)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Q9.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지출 불가능한 항목은?**

A9. 1) 보조금은 활동계획서 상의 사회기여활동 목적에 맞게 물품구입비(소모성 물품에 한함), 홍보비, 임차비, 식비, 다과비, 특근매식비, 출장비, 강사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함(예산편성 기준표 참조)

2) 「예산편성 기준표」 외의 항목들은 집행 불가능하며, 자산·현금·선물성 물품비, 기존 일반·경상운영비, 제한업종, 주류 및 담배 등의 지출은 불가함

**Q10. 식비·다과비, 특근매식비·출장여비 집행방법은?**

A10. 1) 식비·다과비는 외부인이 참석하는 15인 이상 회의·행사의 경우 집행 가능함

※ 식비·다과비는 합산하여 전체 보조금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가능

2) 특근매식비·출장여비는 동아리 내부인원이 4시간 이상 활동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집행 가능함

※ 특근매식비·출장여비는 합산하여 전체 보조금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가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표」 및 「항목별 증빙서류」 참고